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7. 16(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7. 7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0. 7. 8

라. 상정일자 : 2010. 7. 14(제18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한 덕 중
- 검토보고 : 교육전문위원 한 태 형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069호, 2006.12.20)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6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안 제1조)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2조)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3조)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4조)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5조)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로 폐지됨에 따라 실효되는 조례를 정리하고자 2010년 7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공인조례 등 교육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총 6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폐지하고자 폐지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는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조례를 정리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노현경 위원

-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관련 조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폐지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는 이의 없으나,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적용되는 조례는 어떻게 되는가?

< 답 변 >

- 교육전문위원 한태형
 -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인천시 조례로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 : 권용오, 김원희, 강병수, 김기홍, 김영태, 노현경, 배상만, 이수영 위원
-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 등 폐지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폐지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5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6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